

# EU, 2008년도 농정과제 제안

유 찬 희\*

유럽연합(EU) 의회 농업분과위원회에서 지난 5월 8일 마리안 피셔 보엘(Mariann Fischer Boel) 농업 및 농촌개발집행위원은 ‘2008년도 농업정책전략’(Annual Policy Strategy, 이하 APS)을 제안하였다. 이 전략은 2008년도 EU 농업정책의 과제를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1. APS의 목적

APS의 주목적은 명백하고 통합적인 전략의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농업관련 정책 수단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총회(plenary)에서 부의장인 월스트롬(Wallström)의 주재 하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2008년 APS의 목표를 설정했다. 월스트롬이 제시한 APS의 주요 목적은 ‘번영(prosperity)’, ‘연대(solidarity)’, ‘안보(security)\*\*’, ‘강건하고 개방적인 유럽(a strong and open Europe in the world)’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rhew@krei.re.kr 02-3299-4232

\*\* 유럽연합 등 서구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식량 안보’의 개념은 우리나라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량 안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식량 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를 지닌다면, 유럽연합의 경우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의 의미에 보다 가깝다.

## 2. 2008년도 농업부문 주요의제

보엘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농업부문의 주요 과제로 2003년 시작한 시장부문 개혁의 완결과 이를 위한 관련 정책의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 시책으로는 EU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검정(Health Check), 포도주·과일 및 채소·면화부문의 시장 혁신, 2007년 협상이 성공리에 끝난다는 전제 하에 DDA의 결과 이행을 발표했다. 또한 향후 사용될 농업부문 재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재원 조달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2.1.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검정

이 중 2008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이 핵심 정책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1) EU 농업부문 전망, 특히 세계 시장과의 연계 속에서 EU 농산물시장 전망이 어떠한 것인가?
- (2) 단일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더욱 간소화(simplification)할 수 있는가?
- (3) 시장지지정책(우유 쿼터 정책의 시효 만료 포함) 중 수정할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EU 집행위원회 농업분과는 2007년 하반기 중 자료를 발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

\*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품목 보조와 축산 보조를 하나의 직접 직접지불로 통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생산과 연계 없이 지급되고(de-coupled),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중 일부분만이 농업생산의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10개국(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이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200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08년 상반기에 정식 제안서를 발의할 예정이다.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검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CAP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가능한 한 입법·집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개혁을 더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EU도 수입 농식품의 증가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출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CAP에 대한 점검은 역내외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입 증대의 충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수출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생산 농가들이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경제적·정치적 환경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조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종합적인 정책검정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번 정책검정은 이러한 준수 사항을 제시하는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농업부문 의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 CAP의 시장정책 수단(살처분 계획(disposal scheme)\*, 수출상환제도, EU-27\*\*에 대한 적용 문제 등)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또 다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과일 및 채소 부문 개혁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 바 있고, 2008년 시행될 정책에서 첫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번 종합 점검은 유럽 농업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

---

\* 가뭄으로 인한 건조와 수자원 부족 그리고 광우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 지지 정책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6년 1월 23일 ‘Old Cattle Disposal Scheme’을 도입하여 1996년 8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소를 살처분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 이 정책은 2008년 12월까지 유효하고, 기존의 30개월 이상의 소를 유통시킬 수 없도록 했던 ‘Over Thirty Month Scheme’(1996년 5월 발효)을 대신하여 판로를 마련해 주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 2007년 1월 불가리아, 루마니아 신규 가입

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따라 EU 예산 중 어느 정도를 농업부문에 할애할지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농촌개발은 향후에도 CAP의 시금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시장지지부문(the 1<sup>st</sup> pillar)에서 농촌개발부문(the 2<sup>nd</sup> pillar)으로 더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 예산 배정 비율 조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2. 2008년에 다루어질 다른 중요한 의제들

보엘 집행위원은 2008년에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관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1) 조건불리지역(Less Favourable Areas)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관한 입법 준비
- (2)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의 일환으로 홍보·판촉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결과 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
- (3) 유럽 공동체의 대외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농업담당총국(Directive General Agriculture)은 지속적으로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MERCOSUR와의 협상을 더욱 진전시키는 한편 ACP\*와의 경제협력협정(EPA)도 계속 논의할 것이다.

## 3. 2007년 농업 부문의 주요 의제

보엘 집행위원은 이에 앞서 올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3.1. 설탕

2007년 5월 7일 EU 집행위원회는 설탕 구조조정 기금과 관련된 제안을 채택했다. EU는 2년 전부터 설탕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 개혁에 착수해

---

\*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제국 연합

왔고, 구조조정도 이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06년과 달리 설탕 쿼터 감축이 기대보다 미진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엘 집행위원은 201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차(2008년)의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제안서에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aid)의 비율을 현행 최저수준인 10%로 고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2008/09 마케팅 연도 기준으로 생산자들은 쿼터 1톤을 포기할 경우 추가적으로 237.5 유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기간 소급이 적용될 수 있고, 사탕수수 생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구조조정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3.2. 상호준수 의무(Cross Compliance)

상호준수 의무는 CAP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 통제와 검사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온 것도 사실이다. 보엘 집행위원은 통제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에 예외조항(de minimis) 조치의 도입, 검사 시 최대 14일 전에 사전 통보하는 방식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 참고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SPEECH/07/288&type=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Mariann Fischer Boel 연설내용 완역)